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57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행정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시 수수료반환
다만, 소인된 증지는 불반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각종 민원신청의 변경 · 취소시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려는 내용으로

○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 ·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